



# 국가인권위원회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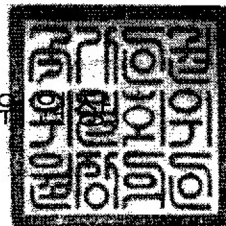
2.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귀하가 진정하신 진정사건(사건번호 : 14-진정-0055900)에 대하여 조사 및 심의한 결과,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3. 다만,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되고 있어 위원회가 정책개선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귀하의 진정사건을 인권정책과로 이관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개선방안 마련 등의 정책적인 검토가 진행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 조사관 정상훈(02-2125-9929)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

정상훈

침해조사과장

전결 2014. 7. 14.

안성을

협조자

시행 침해조사과-7279

(2014. 7. 14.)

접수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9층 침해조사과 / <http://www.humanrights.go.kr>

전화번호 02-2125-9929 팩스번호 02-2125-0922 / [hp386@humanrights.go.kr](mailto:hp386@humanrights.go.kr) / 비공개(6)